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5
----------	-----

2015. 12. 21.(월)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1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24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2월 15일

- 제34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조운희)

가. 제안사유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 등 청년중심의 정책 추진과 전국체전 등 도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282명 → 3,295명(+13명)(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56명 → 1,568명(+12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3명 → 1,614명(+1명)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정책기준 조정내역(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비율 조정

· 4급상당이상 10% 이내 → 34% 이내

· 5급상당 50% 이내 → 26% 이내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 반 직 : +7명(4급 +2명, 5급이하 +5명)

- 연구·지도직 : +5명 (연구사 +2명, 지도사 +3명)

- 소 방 직 : +1명(소방정 +1명)

- 별 정 직 : 직급상향 3명 (5급상당△3 → 4급상당 +3)

### 3. 검토보고 요지

○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 등 청년중심의 정책추진과 전국체전 등 도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1,568명으로 12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1,614명으로 1명 증원하는 등 전체 정원의 총수를 3,282명에서 3,295명으로 13명 증원하며,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공무원의 비율을 4급상당이상은 10% 이내에서 34% 이내로, 5급상당은 50% 이내에서 26% 이내로 조정하고,

○ 직급·직종별 정원에서 일반직 7명, 연구·지도직 5명, 소방직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별정직 3명을 직급상향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
의결 연월일	2015년 12월 일 (제 344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1월 2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

제출연월일 : 2015년 11월 2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 등 청년중심의 정책 추진과 전국 체전 등 도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법규 개정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3,282명 → 3,295명 (+13명)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556명 → 1,568명 (+12명)
  -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3명 → 1,614명 (+1명)
-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역 (안 별표 2)
  - 별정직공무원 비율 조정
    - 4급상당이상 10% 이내 → 34% 이내
    - 5급상당 50% 이내 → 26% 이내
- 직급·직종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 반 직 : +7명 (4급+2, 5급이하+5)
  - 연구·지도직 : +5명 (연구사+2, 지도사+3)
  - 소 방 직 : +1명 (소방정+1)
  - 별 정 직 : 직급상향 3명 (5급상당△3 → 4급상당+3)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282명“을 ”3,29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56명”을 “1,56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613명”을 “1,614명”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9.5% 이상	1.5%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9% 이내	81%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10% 이내	9% 이내	15% 이내	31% 이내	31%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295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4	-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9	44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1	-				
전문경력관 소계	1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53	-				
연구관	27	1		25	1	
연구사	126	-				
지도직 계	28	-				
지도관	6			6		
지도사	22	-				
소방직 계	1,614	-				
소방정	15	4		11		
소방령이하	1,599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3,28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행기관의 정원 : <u>1,556명</u></li> <li>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u>1,613명</u></li> <li>3. ~ 4. (생략)</li> </ol>	<p>제2조(정원의 총수) ----- -----<u>3,295명</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u>1,568명</u></li> <li>2. ----- ----- <u>1,614명</u></li> <li>3. ~ 4. (현행과 같음)</li> </ol>																																																																																																																																																																																																																																																																																																																																
<p>[별표 2] <b>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b> (제3조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생략)</li> <li>4. 별정직공무원</li> </ol>	<p>[별표 2] <b>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b> (제3조제2항 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3. (현행과 같음)</li> <li>4. 별정직공무원</li> </o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4급상당 이상</th> <th>5급상당</th> <th>6급상당</th> <th>7급상당</th> <th>8급상당</th> <th>9급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10% 이내</td> <td>50% 이내</td> <td>10% 이내</td> <td>10% 이내</td> <td>18% 이내</td> <td>2%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50%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4급상당 이상</th> <th>5급상당</th> <th>6급상당</th> <th>7급상당</th> <th>8급상당</th> <th>9급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34% 이내</td> <td>26% 이내</td> <td>10% 이내</td> <td>10% 이내</td> <td>18% 이내</td> <td>2%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50%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p>[별표 3] <b>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b> (제4조 관련)</p>	<p>[별표 3] <b>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b>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6">기관별</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b>3,282</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b>1,43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0</td> <td>8</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7</td> <td>42</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b>1,336</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 상당</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td> <td>1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b>15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27</td> <td>1</td> <td></td> <td>24</td> <td>2</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2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6</td> <td></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 계</td> <td><b>1,61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정</td> <td>14</td> <td>3</td> <td></td> <td>11</td> <td></td> <td></td> </tr> <tr> <td>소방령이하</td> <td><b>1,599</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b>3,282</b>						일반직 계	<b>1,437</b>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36</b>						별정직 계	12						1급 상당	1	1					4급 상당							5급상당 이하	11						연구직 계	<b>151</b>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4						지도직 계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소방직 계	<b>1,613</b>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b>1,599</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colspan="6">기관별</th> </tr> <tr>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출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b>3,295</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b>1,444</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0</td> <td>8</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9</td> <td>44</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b>1,341</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 상당</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td> <td>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b>153</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27</td> <td>1</td> <td></td> <td>25</td> <td>1</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12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6</td> <td></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직 계</td> <td><b>1,614</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소방정</td> <td>15</td> <td>4</td> <td></td> <td>11</td> <td></td> <td></td> </tr> <tr> <td>소방령이하</td> <td><b>1,599</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b>3,295</b>						일반직 계	<b>1,444</b>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9	44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41</b>						별정직 계	12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8						연구직 계	<b>153</b>						연구관	27	1		25	1		연구사	126						지도직 계	28						지도관	6			6			지도사	22						소방직 계	<b>1,614</b>						소방정	15	4		11			소방령이하	<b>1,599</b>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b>3,282</b>																																																																																																																																																																																																																																																																																																																																
일반직 계	<b>1,437</b>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7	42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36</b>																																																																																																																																																																																																																																																																																																																																
별정직 계	12																																																																																																																																																																																																																																																																																																																																
1급 상당	1	1																																																																																																																																																																																																																																																																																																																															
4급 상당																																																																																																																																																																																																																																																																																																																																	
5급상당 이하	11																																																																																																																																																																																																																																																																																																																																
연구직 계	<b>151</b>																																																																																																																																																																																																																																																																																																																																
연구관	27	1		24	2																																																																																																																																																																																																																																																																																																																												
연구사	124																																																																																																																																																																																																																																																																																																																																
지도직 계	25																																																																																																																																																																																																																																																																																																																																
지도관	6			6																																																																																																																																																																																																																																																																																																																													
지도사	19																																																																																																																																																																																																																																																																																																																																
소방직 계	<b>1,613</b>																																																																																																																																																																																																																																																																																																																																
소방정	14	3		11																																																																																																																																																																																																																																																																																																																													
소방령이하	<b>1,599</b>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b>3,295</b>																																																																																																																																																																																																																																																																																																																																
일반직 계	<b>1,444</b>																																																																																																																																																																																																																																																																																																																																
1~2급	1					1																																																																																																																																																																																																																																																																																																																											
2~3급	2	1	1																																																																																																																																																																																																																																																																																																																														
3급	10	8		1		1																																																																																																																																																																																																																																																																																																																											
3~4급	2	2																																																																																																																																																																																																																																																																																																																															
4급	69	44	7	5	7	6																																																																																																																																																																																																																																																																																																																											
5급이하 소계	<b>1,341</b>																																																																																																																																																																																																																																																																																																																																
별정직 계	12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8																																																																																																																																																																																																																																																																																																																																
연구직 계	<b>153</b>																																																																																																																																																																																																																																																																																																																																
연구관	27	1		25	1																																																																																																																																																																																																																																																																																																																												
연구사	126																																																																																																																																																																																																																																																																																																																																
지도직 계	28																																																																																																																																																																																																																																																																																																																																
지도관	6			6																																																																																																																																																																																																																																																																																																																													
지도사	22																																																																																																																																																																																																																																																																																																																																
소방직 계	<b>1,614</b>																																																																																																																																																																																																																																																																																																																																
소방정	15	4		11																																																																																																																																																																																																																																																																																																																													
소방령이하	<b>1,599</b>																																																																																																																																																																																																																																																																																																																																

## 관계 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원 등 청년중심의 정책 추진과 전국체전 등 도정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
  - 정원의 총수 조정 : 3,282명 → 3,295명 (+13명)

###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 3. 관련조문

- 안 제2조
  -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29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568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614명

###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 추계의 전제 : 증원 +13명
  - 일반직 7명, 연구직 2명, 지도직 3명, 소방직 1명
- 추 계 결 과 : ' 16년 인건비 986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채용조달방안 : 도비100%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세 출	5,236,045	986,233	1,015,820	1,046,295	1,077,683	1,110,014
공무원 인건비	5,236,045	986,233	1,015,820	1,046,295	1,077,683	1,110,014

※ 매년 임금인상률 3%(예상치) 적용 계산

###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정성엽